



축산법 시행 규칙은

축산법 시행 규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어느 타 산업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해 온 양계업은 그 동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성장하여 왔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현재까지의 축산법 특히 양계업의 시발점이 되는 부화에 관한 시행 규칙은 영세한 축산업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려를 주 목적으로 하여 왔으나 이제는 무질서한 부화장의 난립과 그에 따른 무책임한 부화, 결과적으로 양계산물가격의 심한 진폭등으로 업계자체내에서 자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가로 막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개 단체나 개인의 힘으로 규제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므로 양계업계에 종사하는 선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가금협회와 부화협회에서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많은 양계가들 및 관련업체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이 시행규칙

에 관한 보완점을 마련하여 농림부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 하니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면 현행 축산법시행규칙의 모순점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가금협회와 부화협회의 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시행규칙의 모순점을 지적해 보면 제25조(부화업자의 등록)에서는 등록사항 변경시에 관한 아무런 단서가 없으며, 부화장과 종계장의 인적인 면과 시설적인 면에서 등록규격기준이 없어 명칭만의 등록이 가능하여 무질서한 부화장의 난립을 가져왔으며 또한 5항의 초생추 생산계획에 관하여 언제까지 한다는 시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계 당국이나 관련기관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 많은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

제27조(초생추 품종보증서) 2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목상뿐인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여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종란의 사용 제한)에서도 종계장의 시설기준이 없어 불량추생산 억제방안이 없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비표

☆가금협회안☆

현행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5조(부화업자의 등록)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종란을 부화하는 자(이하 부화업자라한다)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화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부화장의 명칭과 소재지 2. 경영자의 성명		

개정되어야 한다

<p>3. 부화기의 종류별 능력과 대수</p> <p>4. 종란 생산장의 명칭과 소재지</p> <p>5. 초생추 생산계획</p> <p>6. 부화기간</p>	<p>3.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화장 시설</p> <p>4. 종계를 확인하는 종계 검정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의 종계인정서와 종란생산장의 명칭 및 소재지</p> <p>7. 부화에 관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의 이력서</p>	<p>부화장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무질서한 등록을 방지한다.</p> <p>종계 검정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p>
<p>제27조(초생추 품종 보증서)</p> <p>① 부화업자의 초생추 또는 중추를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보증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5조의 2(부화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생산계획보고) 전조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변경된 사항이 있을때는 2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초생추 생산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해당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보증서는 종계검정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부화업자의 등록후 변경사항에 대한 파악과 생산계획 보고를 받아 생산추정 및 조절 자료에 공하고저 신설코자 함.</p> <p>시장, 군수 종계확인은 사실상 곤란하다. 각 부화장에서 종계출품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한 단체 또는 기관에서 확인케 함으로써 품종을 보증할 수 있다</p>

* 부화협회안 *

부화협회에서는 제25조와 제 28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부화장과 종계장의 시설 규격기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고시령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부화장 시설기준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의 부화장 시설기준

부화장의 시설	기 준
부 화 사	<p>1.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구조 일 것.</p> <p>2. 바닥은 콘크리트 마루 또는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한 재료를 쓸 것.</p> <p>3. 육추시설이 놓여 있지 않을 것</p>
부 화 기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충분한 온도, 습도 및 환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소 독 용 시 설	부화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용소독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